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0,008,662	13,500,260
일반회계	408,287,681	12,248,630
특별회계	41,720,981	1,251,629
기타특별회계	41,720,981	1,251,62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2,225	9,967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461,709	103,851
수질개선 특별회계	60,906	1,8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486,512	104,595
주차장 특별회계	929,822	27,89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1,907,005	657,210
기반시설 특별회계	787,757	23,633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0,755,045	322,65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72,02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